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신종 MMF(S-27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보수 인하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9 조(보수)	③ (생략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35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164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	③ (현행과 동일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15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644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0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0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

		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변 경 전

하나 UBS 신종 MMF(S-27 호)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			
	판매 수수료	총 보수	판매 보수	동종유형 총보수
	없음	0.5000	0.3164	-

변 경 후

하나 UBS 신종 MMF(S-27 호)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			
	판매 수수료	총 보수	판매 보수	동종유형 총보수
	없음	0.4000	0.2644	-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7 월 08 일 보수 인하
제 2 부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

<table>
<tr><td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(생략)</td><td>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신종 MMF(S-27 호)</td><td>0.1356</td><td>0.3164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0.5000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신종 MMF(S-27 호)</td><td>0.1156</td><td>0.2644</td><td>0.0100</td><td>0.0100</td><td>0.4000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신종 MMF(S-29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-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- 종류 C-F 가입자격 정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생략) 4.종류 C-F 수익증권 : 가.집합투자기구 나.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현행과 동일) 4.종류 C-F 수익증권 : 가.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나.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다.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5.종류 C-I 수익증권: 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)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4. (현행과 동일) 5.종류 C-I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	③ (생략)	③ (현행과 동일)

신탁보수	[종류 A-U 수익증권] ~ [종류 C-F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[종류 A-U 수익증권] ~ [종류 C-F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C-I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3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

		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집합투자기구의 종류** <신설>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집합투자기구의 종류** 기타 / 고액(I) /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C-I /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C-I /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7 월 08 일 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 -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- 종류 C-F 가입자격 정정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기타 / 고액(I) /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<table>
<tr>
<td></td>
<td>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926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396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가. 매입
(2) 가입대상
*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C-F</td><td>가.집합투자기구
나.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</td></tr>
</table>
<신설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가. 매입
(2) 가입대상
*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C-F</td><td>가.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
나.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
다.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</td></tr>
<tr><td>종류 C-I</td><td>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)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926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396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판매수수료</th><th>후취판매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C-I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C-I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</td><td>0.0336</td><td>0.0600</td><td>0.0100</td><td>0.0100</td><td>0.1136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
<tr><td>C-I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</td><td>12</td><td>24</td><td>37</td><td>64</td><td>146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(K-5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- 종류 C-F 가입자격 정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종류 C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.종류 C-F 수익증권 : 가.집합투자기구 나.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종류 C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.종류 C-F 수익증권 : 가.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나.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다.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3.종류 C-I 수익증권: 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)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종류 C-I 수익증권
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	③ (생략) [종류 C 수익증권] ~ [종류 C-F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C 수익증권] ~ [종류 C-F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C-I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

		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집합투자기구의 종류** <신설>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집합투자기구의 종류** 기타 / 고액(I) /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: C-I /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: C-I /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7 월 08 일 -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- 종류 C-F 가입자격 정정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기타 / 고액(I) /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
(2) 가입대상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
종류 C-F	가.집합투자기구 나.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

<신설>
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
(2) 가입대상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
종류 C-F	가.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나.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다.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
종류 C-I	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)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<신설>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종류형 명칭		선취판매수수료	후취판매수수료	환매수수료
C-I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	없음	없음	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종류형 명칭		집합투자업자 보수	판매회사보수	수탁회사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총 보수
C-I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	0.0450	0.0600	0.0150	0.0100	**0.1300**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종류형 명칭		1 년	2 년	3 년	5 년	10 년
C-I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	13	27	42	74	168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1 호

2. 주요 변경내용

- 오기 정정에 따른 정관 변경(누락 사항 기재)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부 칙	<누락 사항 기재>	이 정관은 2019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. 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제9조(최저순자산액) 내용 삭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7 월 08 일 오기 정정에 따른 정관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관한 사항		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2 호

2. 주요 변경내용

- 오기 정정에 따른 정관 변경(펀드명 및 누락 사항 기재)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 암바토비 니켈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2 호	하나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2호
제 1 조(상호 및 종류)	① 이 회사는 하나 암바토비 니켈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2 호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Hana Ambatovy Nickel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Special Investment Company 2 로 표기한다.	① 이 회사는 하나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2호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Hana UBS Ambatovy Nickel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Special Investment Company 2로 표기한다.
부 칙	<누락 사항 기재>	이 정관은 2019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. 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제9조(최저순자산액) 내용 삭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

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(추가)	2020 년 07 월 08 일 오기 정정에 따른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 호)[국공채]

2. 주요 변경내용

- 보수 인하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9 조(보수)	③ (생략) [종류 C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4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374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A-U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4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W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4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C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1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604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00 [종류 A-U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1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00 [종류 W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1.14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00

	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8	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0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

<table>
<tr>
<td></td>
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전환가능(A-U)</td><td>납입금액의 0.5% 이내</td><td>0.2926</td><td>0.1000</td><td>0.36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</td><td>없음</td><td>0.5300</td><td>0.3374</td><td>0.24</td></tr>
</table>
운용전문인력
(생략)
</td>
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전환가능(A-U)</td><td>납입금액의 0.5% 이내</td><td>0.2396</td><td>0.1000</td><td>0.37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</td><td>없음</td><td>0.4000</td><td>0.2604</td><td>0.21</td></tr>
</table>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</td>
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보수 인하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9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00%</td><td>연 0.23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/table>
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A-U</td><td>수수료 선취-오프라인-전환가능</td><td>0.1446</td><td>0.1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0.2926</td></tr>
<tr><td>C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</td><td>0.1446</td><td>0.3374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0.5300</td></tr>
<tr><td>W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랩</td><td>0.1446</td><td>0.0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0.1926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(생략)
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A-U</td><td>수수료 선취-오프라인-전환가능</td><td>0.1146</td><td>0.1000</td><td>0.0150</td><td>0.0100</td><td>0.2396</td></tr>
<tr><td>C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</td><td>0.1146</td><td>0.2604</td><td>0.0150</td><td>0.0100</td><td>0.4000</td></tr>
<tr><td>W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랩</td><td>0.1146</td><td>0.0000</td><td>0.0150</td><td>0.0100</td><td>0.1396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(업데이트)
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
(생략)
</td><td>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
(업데이트)
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 수</th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 수</th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</th><th>료</th><th></th><th>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</th><th>료</th><th></th><th>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</tr>
<tr><td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*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,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.

[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해지가산세	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
특별 중도해지	천재지변

(연금외수령) 사유	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,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해지가산세 없음
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	연금소득 5.5%(종합과세 가능)

* '13.1.1~'13.2.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
(단,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.5% 과세)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7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 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

	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・ 천재지변 ・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・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・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・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7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(K-1 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 1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 1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9
26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3
96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생략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(K-1 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 1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전환형 구조 1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9
26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3
96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생략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1.5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9 26%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 00%</td><td>연 0.23 96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9
26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3
96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생략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</td><td>연 0.29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</td><td>연 0.23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1호)[국공채]</td><td></td><td></td><td>00%</td><td>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>1호)[국공채]</td><td></td><td></td><td>00%</td><td>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9
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3
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7 월 08 일
-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</td><td>연 0.29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 수수료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</td><td>A-U</td><td>0.5% 이내</td><td>연 0.10</td><td>연 0.23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1호)[국공채]</td><td></td><td></td><td>00%</td><td>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>1호)[국공채]</td><td></td><td></td><td>00%</td><td>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9
26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
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
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
전환
(1) 전환형 구조

<table>
<tr><th>펀드명</th><th>종류</th><th>선취
판매
수수
료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총보
수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(K-1호)[국공채]</td><td>A-U</td><td>0.5%
이내</td><td>연
0.10
00%</td><td>연
0.23
9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7 월 08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7 월 08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58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8.85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